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대학원”을 “제29조의2제1항 각호 대학원”으로 한다.

별표 제1호가목 후단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 기간의 계산은”으로, “한”을 “받은”으로, “부과처분 후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”을 “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”으로, “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”를 “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대학생의 범위)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 1. ~ 3. (생략) 4. 「고등교육법」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	제2조(대학생의 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제29조의2제1항 각호 대학원----- ----- -----
〔별표〕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46조 관련) 1. 일반기준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부과처분 후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	〔별표〕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46조 관련) 1. 일반기준 가. ----- ----- ----- ----- ---. --- <u>경우 기간의 계산은</u> ----- ---- <u>받은</u> ----- <u>처분 후 다시</u> <u>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</u> <u>된</u> ----- <u>한다.</u> 나. ~ 다.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대학재정장학과	
연 락 처	044-203-6271